

9.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 試案

資料提供：建設部・國土開發研究院

〈요 약〉

제목: 제3차 국토개발계획(1992-2001)시안

1. 국토계획의 성격과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 국토계획의 성격

- 국토계획은 국민들의 주거·생산·여가활동을 국토공간상에 적정배치하고 국토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한 국토개발의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는 국가계획임
- 국토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서 제3차 국토계획은 2000년대를 앞둔 1992-2001년을 계획기간으로 함

□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 1990년 1월, 건설부 주관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전담반(9개분야 총73명)과 자문위원회(총 106명)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음
- 1990년 9월,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제3차 국토계획의 1차 시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관련전문가 및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991년 2월에 2차 시안을 작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책토론회(3월 12일-14일)를 개최
-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앙부처, 시·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89개 기관과

- 협의를 거쳐 조정된 계획시안을 금번 중앙공청회(8월 28일~29일)에 회부, 의견수렴. 이어 지방공청회를 9개 지역(9월 9일, 11일, 13일)에서 개최 예정
-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시안은 다시 수정, 보완되어 소정의 법정절차를 거친후 1991년 12월에 확정·공고될 예정임

2. 제3차 국토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 여건

- 우리나라는 그간 제1, 2차 국토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속도로, 항만, 수자원 공급시설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토기반 조성에 힘써왔으나 투자정도가 경제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시설부족의 애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도집중으로 인한 지역차가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90년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국제화·개방화·첨단화의 급속한 진행, 국통일여건의 성숙, 또한 2001년에 1인당 GNP가 약 1만7천불로 높아가는 과정에서 국민의식이 다양화되고 주택, 여가환경, 도로, 항만 등 국민기본복지부문과 사회간접시설에서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국토개발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국토개발의 현안과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토개발의 방향과 지침의 설정이 시급한 상황임

□ 제3차 국토계획의 기조와 기본목표

- 제 1, 2차 국토계획의 거점개발을 통한 국가성장기반의 구성, 수도권의 성장억제 노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정비를 주된 계획기조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구,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개방화에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조성에 기조를 두고 있음
- 상기 계획기조에 입각한 제3차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음

□ 제3차 국토계획의 추진전략

- 기본목표의 실현을 위해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집중육성, ▲국토의 중서부, 서남부 지역에 신산업지대조성과 산업의 구조개선 촉진,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주택·상하수도등 국민생활환경부문의 투자확대 및 제도확립,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등 6개 실천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3.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국토골격의 개편방향

- 과거추세가 지속될 경우 '92~2001년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될 210만명의 인구중 100만명 이상을 지방에 정착시킴으로서 현재의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를 점차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시키도록 함
- 이를 위하여 ▲수도권의 집중억제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도시와 중소도시를 특화육성토록 하고 농촌은 다기능적인 지역으로 구조전환을 유도함. ▲산업의 상대적 취약지역이었던 국토의 서남부, 중서부지역 일대의 신산업지대를 조성·육성하고, ▲국토의 동북부지역 및 제주도 지역은 국민여가활동의 급증에 대처한 국민여가지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이들 지역의 육성·개발을 지원·선도 할 수 있도록 고속교통·통신망체계를 구축토록 함

□ 주요 정책수단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및 교육·연구시설 입지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계속하는 한편,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해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하고, ▲정부기관의 지방이동을 강력히 추진하며, ▲수도권외로의 이전시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함. 다만 수도권내부의 균형을 위해 ▲위성도시의 건설등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며, ▲신국제공항의 건설과 연계하여 국제적 기능을 보강함

- 지방의 집중육성을 위해, ▲지방대도시에 업무단지(오피스파크)를 조성, 특화 중구 관리기능을 유치하고, ▲지방중소도시의 기능전문화를 위해 중앙에 주력 산업지원 단을 설치하는 등 도시별 주력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며, ▲고급인력양성과 산업·문화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도시형태의 신도시를 개발함. 또한 ▲농어촌지역의 공장, 주택, 여가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나감
- 국토의 중서부 및 서남부지역의 신산업지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중 총 공장용지 신규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 지역에 조성하며, ▲고급두뇌와 생산현장의 결합을 위해 생산-기술-인력의 지역내 자립체계를 구축함. 아울러 지방의 산업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중심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
- 국토의 동북부지역과 제주도민지역의 국민여가지대의 조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 개발과 연계개발을 도모하며, ▲주요지점에 휴양거점도시를 육성토록 함
-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을 위해, ▲계획기간중 약1,400km의 간선고속도로를 신설하며, ▲경부, 호남, 영동축에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속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지역별 거점항만과 공항건설을 추진함

4. 국민생활과 국토이용의 선진화

□ 기본방향

- 국민생활의 대폭적인 질적향상과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 상하수도, 국민여가공간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며, ▲환경, 수자원, 에너지, 해안역등의 관리·안전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토록 함

□ 주요 정책수반

- 계획기간중, ▲GNP의 약6%를 투입 주택 540만호를 신규로 건설·공급하여 주택 보급율을 92.8%를 제고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며, 이를 위해 다량의 임대주택을 건설함
- 국토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종합적 녹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환경 시범도

- 시를 조성함,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사후평가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공장입지시에 환경적립금을 부과하며, ▲157개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지역별 확보를 도모함
-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2개 냉을 신설하고, ▲14개소의 지역별 광역상수도 건설로 상수보급율을 90%로 높이며, 4개소의 공업용수도를 건설함. 또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24,000km의 상수도 노후관을 대체토록 함
 - 계획기간중 ▲1,179㎢의 해안매립을 시행하여 국토면적을 10만㎢로 확장하며, ▲397㎢의 택지, 114㎢의 공장용지 및 838㎢의 공공용지를 공급함. 또한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정착시켜 특기행위를 근절하며, ▲토지관련 기존세제를 보완, 강화하고 토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함

5.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민통선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며,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수자원·환경분야등에 남북 공동개발사업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함

6. 계획의 효율적 집행

- 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택, 수자원·상하수도, 교통, 공업입지등 주요부문에 약257조원(85년 불변가격)을 투입토록 하며, ▲이중 27.1%는 중앙정부, 18.2%는 지방정부, 54.7%는 민간부문에서 분담함.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을 위해 지방체의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자도입,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설치함
- 아울러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대도시권 확대추세에 부응하여 9개의 계획권역을 설정하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고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함. 또한 ▲자율적 지역개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 집행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계획·집행의 종합적 조정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2001년의 국토미래상(지표) 〉

구 분	지 표	단 위	1990	2001
총 량	인 구	천 인	42,869	47,150
	1 인 당 GNP	\$.	5,569	17,760
인 구 배 치	수 도 권	추세 연장	천인(%)	18,320(42.7)
		계 획	천인(%)	—
	지 방	추세 연장	천인(%)	24,549(57.3)
		계 획	천인(%)	25,900(54.9)
도 시 화	도 시 화 을	%	77.8*	86.2
공 업	공 장 용 지	km ²	340**	475
주 택	주 택 보 급 을	%	72.1	92.8
	주 택 수	천호	7,374	12,088
교 통	고 속 도로	km	1,551	2,951
	도로 포장 을	%	71.5	100.0
	철도 전철 비 을	%	16.7	50.0
	항 만 하 역 능 력	백만톤	224	420
	자 동 차	만대	340	1,200
	가구당 자동차	대/가구	0.3	0.8
상하수도	상수 보급 을	%	79	90
	하수 처리 장	%	31	70
수 자 원	총 용 수 이 용 량	억 m ³	249*	330
여 가	여가활동 참여비	백만인/년	279*	530

주) *는 '88년 기준

**는 '89년 기준

I.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조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 국토계획의 성격

-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중앙정부 주관의 범부처적 국가 계획
- 계획 수립의 목적은 인구와 산업의 배치,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정책 등 국토개발의 골격에 대한 장기적 방향 설정
-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1991년 말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행중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추진 경위

○ 전담작업반의 구성

- 국토개발연구원에 전담작업반(9개 분야 73명)과 각계 인사로 편성된 자문 위원회(7개 분야 106명) 구성 : '90. 1
- 관계부처의 실무계획반 구성 : '90. 5

○ 계획시안작성

- 관계기관의 장·단기 계획 및 정책 취합 : '90.5~11
- 제1차 계획시안작성 : '90. 9
- 자문위원회 개최 : 총 22회
- 정책토론회 개최 : '91. 3. 12~3. 14
- 관련기관협의(중앙부처, 시, 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89개 기관) : '91. 4~8

○ 향후 계획

- 공총회 개최(중앙 및 지방) : '91. 8~9
- 국토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 확정, 공고 : '91. 9~12

1. 제3차 국토계획의 배경과 계획의 기조

□ 배경

- 우리나라는 그간 제1차 및 제2차 국토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하부구조시설을 대폭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더우기 '90년대는 지방자치의 실시, 국제화·개방화의 진행, 남북통일 여건의 성숙 등 국토개발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음
-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책방향의 정립이 요망되고 있음

□ 국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 성과

- 제1, 2차 국토계획 기간중 공업용지는 3배, 고속도로는 2.5배, 항만하역능력이 10배로 증가하는 등 국토하부구조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었음
- 국토이용관리법, 지방공업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국토개발관련 법령을 제정
• 정비하여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최근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음

○ 문제점

-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도시계층간 및 도농간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밀·과소지역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가중 등 국토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물동량의 교통체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환경부문투자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이 아직 낮은 편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기회지수 비교〉

구 분	1980	1988
수 도 권	156	141
지 방	65	67

□ '90년대 국토개발의 도전적 요소

-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심화 :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규증가 인구의 98%(약 380만명)가 수도권에 집중 예상
-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 시책의 수요급증 : 계획기간중 택지 약 1억 2천만평, 2배이상의 물동량 신규수요 발생
- 개방화 및 국제적 자원보호주의에 따른 자원비용 증대 :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의 국제적 개방과 원자재 도입비용의 증대로 국제경쟁력 강화 우려
- 환경오염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 할거주의 팽배 우려

□ 제3차 국토계획의 기조

- 제3차 국토계획은 우리국토 고유의 특성과 '90년대의 여건변화에 비롯되는 국토개발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당한 현안과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개발수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 국토개발과 국민생활의 안정기반인 균형성, 효율성, 쾌적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여망인 국토통일에 기여함을 기조로 함

〈국토계획 기조의 변화〉

구 분	제1차계획	제2차계획	제3차계획
수립 당시의 1인당 GNP	319불('72)	1,824불('82)	6,767불('92)
사회적 여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제성장 우선• 공업화의 강력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성장과 민생추구• 균형과 성장의 조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의 정착• 국제화·개방화의 진전과 국민의식의 고양• 통일분위기 성숙
계획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개발 및 하부 구조시설 확충에 의한 국토의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의 성장억제와 지역경제권의 육성에 의한 국토의 균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균형성, 효율성, 쾌적성, 통합성 촉진을 통한 선진국토의 창출

2. 계획의 기본목표와 전략

□ 기본목표

- | | |
|-------------------------|-------------|
|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 국토공간의 균형성 |
| ○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 - 국토이용의 효율성 |
| ○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 | - 국민생활의 쾌적성 |
|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 남북한간의 통합성 |

□ 전략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 종래의 수도권억제를 통한 소극적인 국토균형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집중육성에 의해 자발적인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국토균형개발 추구
-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의 구조개선 촉진 : 국토의 중서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고 동남부 지역의 기존공업을 고도화 하며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토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동시에 국제적 경쟁력 강화
-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 지역간 연결하는 고속교류망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간의 연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내외 물동량과 정보의 신속한 흐름을 도모하며 지방발전 선도
- 국민생활, 환경부문의 투자확대 및 억제확립 : 그간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주택, 상하수도, 환경등의 부문에 대한 부문에 대한 대폭 확대하여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국토이용 및 보전억제를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토지 공개념 정착 도모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 국토개발의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장치를 강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역개발력량을 제고
-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 민통선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 접경 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의 조성,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남북 공동개발사업등의 단계적 시행

3. 핵심과제의 추진전략

- 3차계획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국가재원낭비를 방지하고 국토골격형성과 3차계획 목표달성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국토계획의 연차별 평가·분석시 집중관리

사업명	필요성	개발전략
1. 신산업지대 및 첨단산업 단지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개발촉진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조성 및 용수·항만·도로·첨단 정보시설등 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도시의 연계 개발 • 대학·연구소의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 및 산·학·연·관 연계체계 강화 • 개발촉진을 위한 제3섹타 도입 및 기구설치 등 추진기구 마련
2. 국민여가지대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수요에 대처 • 지역발전의 촉진 • 금강산과의 연계개발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락체육시설의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 전국 대도시와의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 • 관광지 배후 휴양도시의 건설 •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3. 전국간선고속도로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촉진 • 고속교통수요 급증에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7개의 남북; 9개의 동서축형성 (2001년까지 고속도로 1,400km건설) • 대량교통추에 고속전철과 철도의 단계별 건설·확충 • 신산업지대, 국민여가지대, 신도시등의 접근 노선 우선건설 • 교통·통신시설과의 연계성 강화
4. 권역별 항만체계 구축 및 국제공항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물동량 증가에 대처 • 생산적인 국토기반의 구축 • 국제기능의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로 거점항만 개발·확충 및 항만별 기능 특화 유도 • 동남아지역 중추공항 건설 및 권역별 국제공항 확충 • 신산업지대·국민여가지대와 연계성 강화 및 국제적 기능 보강
5. 주택 540만호의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보급율의 제고 • 서민생활수준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류형별, 규모별, 공급체계 정립 • 계획 전반기에는 소형중심건설, 후반기에는 규모다소 확대 • 주택자재·인력수급 및 재원조달방안 강구 • 시장기능 활성화 및 민간참여의 활성화 방안 강구

사업명	필요성	개발전략
6. 유역별 수자원의 종합관리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자원관리의 효율화·체계화 환경오염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별 환경, 수질, 수량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추진 유역별 관련계획의 조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조정
7. 중소도시의 주력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의 선도 산업구조 고도화 지자체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별 주력산업의 선정 및 주력산업단지의 조성 산·학·연의 연계로 기술 고도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
8. 접경지역의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통일에 대비 소외지역의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통선 지역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남북교류망의 복원·개발 및 교류공간 조성 공공개발사업의 수행

II.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의 육성

1. 계획수립의 배경

- 도시화, 공업화과정에서 파생된 수도권의 과밀문제와 지방의 상대적 침체문제의 병존은 오늘날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
 - 수도권이 행정, 취업, 우수교육기능등에 있어서 지방을 압도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 집중됨 : 전국에서 새로이 늘어나는 인구수 중에서 수도권이 분담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60년대 : 57%, 70년대 : 74%, 80년대 : 87%). 이로인하여 수도권에 주택, 토지, 환경오염, 교통, 범죄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
 - 반면에 지방의 경우 대도시는 행정, 경제부문등에서 중추관리기능이 극히 미약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농어촌의 낙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은 국가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소진을 방지하고 새로운 에너지 축적기반의 조성이 요구
-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지방자치, 산업과 기술

의 첨단화, 전면적 도시화 추세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의 경우는 집중을 억제하여 전국이 능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조성하는 전략을 입안, 추진하고자 함

2. 계획의 기본방향

-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다각적으로 억제하며 수도권내 지역간 기능의 재배치를 촉진함
- 지방의 육성을 위해서는 향후 경제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기능을 재편함에 역점을 둠
 - 지방대도시 개발: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할 핵심도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급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는 중추관리기능(행정, 기업본사, 연구, 정보등)을 대폭 보강
 - 지방중소도시와 신도시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에 주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도시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산업진흥 및 인력양성계획, 대도시권 확장전망에 따라 신도시를 선별적으로 개발하며
 - 농어촌개발: 농어업 부문의 개방화에 대처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위주의 단일기능적 농어촌을 공업과 여가활동기능이 보강되는 다기능적 농어촌으로 전환

3. 추진계획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집중억제

- 수도권 지역내 신규 대단위공업용지의 공급억제 및 대규모공장 입지 규제
- 수도권내의 인구집중 유발요인이 되는 산업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균형개발에 사용
- 수도권내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수도권내 대규모 연구·연수시설 입지규제와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및 증원 억제
- 수도권외로의 산업이전시설에 대한 세제·금융혜택의 강화
- 국내적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대도시 입지를 유도하되 수도권내의 신국제 공항지역에

국제전시장, 컨벤션센터기능의 확충등 국제적 기능은 일부 보강

-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발전 현상을 완화하며, 산업시설의 재배치, 택지 및 주택수요등을 감안하고 서울시의 기능배치를 전제로 하여 수도권내 공간구조를 합리적으로 정비 이에 따른 광역교통망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계획, 집행의 조정·평가 및 지방발전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

□ 지방대도시의 성장관리

- 지방대도시별 특화된 중추관리기능의 축적을 위한 시설 유치
 - 부산 : 국제금융, 국제무역 기능
 - 대구 : 업무중추기능, 첨단산업 및 패션산업기능
 - 광주 : 첨단산업기능, 예술·문화기능
 - 대전 : 행정기능, 첨단연구기능
- 권역별 중심도시의 기능 보강
 - 전주, 청주, 춘천, 제주 등 지역중심도시의 산업, 문화기능의 보강
- 업무단지의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신시가지개발 차원에서 업무단지(오피스파크)를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에 조성
 - 업무단지내 첨단정보망 체계구축, 도시설계에 의한 고급화된 쾌적한 환경조성, 연구·정보시설 설치, 국제기능 부상, 국제항공과의 고속연결망의 확충등 기반시설의 구축
 - 실수요자에 의한 업무단지 개발방식의 도입
 -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산업배치등의 종합적 광역계획·집행제도를 마련함

□ 중소도시의 기능전문화를 위해 주력산업육성 종합대책의 강구

- 도시별로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주력산업장려단지를 조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도시별 특성에 따라 관광휴양도시, 대학도시,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등 개성과 특화기능을 갖춘 도시 형태로 발전 유도
- 주력산업진흥을 위한 인력양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별 관련 대학 및 연구시설을 신설·육성
- 주력산업은 지역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중앙정부는 금융, 재정, 기술적 지원 역할 담당
 - 지방정부 : 산·학·관이 참여하는 「주력산업육성위원회(가칭)」설치 운영
 - 중앙정부 : 「주력산업지원단(가칭)」설치 운영

신도시의 선별적 개발

- 신산업지대, 국민여가지대조성, 고속교통등과 연계하여 신도시를 선별적으로 개발하되
- 특히 대학도시를 중심개발하여 고급인력양성 및 첨단산업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유도해 나감

농어촌경제의 고도화와 합리적 토지이용

-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업 및 관광여가 산업의 진흥
- 기술집약적 농업 육성 및 농어업제품 수출단지, 주산단지의 개발, 육성으로 농어업제품의 수출기반 조성
- 우량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전업농을 육성하는 대신, 비농업진흥지역에는 공장, 주택, 여가용지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중소도시 중심의 정주권 개발로 제조업의 유치,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여가산업 진흥, 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급격한 감소, 산업기반의 취약한 낙후지역, 남북접경지역 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투자 지원

4. 계획추진의 기대효과

- 과거 추세를 그대로 연장할 경우에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1992~2001년중 약

210만명이 신규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시책의 추진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과거추세연장 경우의 절반 정도인 약100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의한 계획추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시책이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서로 협조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계획권역을 설정
 - 기존의 지역경제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어긋나고 2개 이상 도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지역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되는 폐단과 부담이 생겨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획 및 집행기능이 아주 미약하게 됨
 - 제3차 국토계획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계획권역을 설정
 - 다만 대도시의 광역화 추세전망에 따라 도, 특별시, 직할시가 서로 인접한 경우는 이를 지역이 포함되는 광역계획권역을 설정
 - 9개의 계획권역 설정 : 수도권, 강원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
- 계획권역별로 지방정부는 투자계획과 연계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광역계획권역의 경우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
-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의 남발과 한정된 국가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권역별 지역개발계획을 조정,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III. 산업의 육성 및 배치

1. 계획수립의 배경

- 지난 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동안 공업단지, 용수, 배후공업도시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우리나라 공업생산 및 경제규모 성장에 크게 기여. 특히,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울산, 창원, 포항, 여천 중심의 동남해안공업벨트는 국가의 중추적 산업기지로 성장
- 그러나 한정된 자본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선별적 입지정책』결과 수도권과 도남부지역으로 공업투자 집중은 지역간 개발격차 문제 야기
- 특히 80년대들어 수도권지역으로의 공업집중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1980년에 전국공업생산의 38.6%와 전국제조업고용의 45.9%를 차지하던 것이 1989년에는 각각 44.9%와 48.8%로 증가추세에 있음
- 한편, 90년대에도 1차산업으로부터 2, 3차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제조업부문중 조립공업종과 첨단기술산업, 3차산업중 연구개발, 정보처리등 생산지원서비스분야의 성장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산업의 입지가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계획의 기본방향

- 90년대 공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공업발전을 이루는데 있음
 -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지방공업 육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 환경보전, 자원관리 등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

3. 추진계획

가. 주요 추진전략

□ 수도권 공업입지의 적정관리

-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수도권지역의 신규공업입지는 지속적으로 억제하며, 특히 지방입지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물리적인 입지여건과 함께 『파밀억제부담금』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수도권내 입지비용을 중대시킴으로서 지방분산 유도
- 수도권내의 이전공장수요등 기업의 높은 입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유도권역 내 계획공단을 개발하고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여 수도권 공업의 적정분산 유도
-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임대공단의 공급 확대

□ 신산업지대의 계획적 육성

- 수도권공업억제정책과 함께 90년대 지방공업개발의 거점 구축을 위하여 중서부지역, 서남부지역에 『신산업지대』 계획적 육성
- 이들 지역의 경우 '70, '80년대에는 공업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아산, 군산, 대불, 광양항 및 임해거점공단 건설, 간척매립에 의한 저렴한 용지확보, 지역주민의 공업개발에 대한 높은 열기 등으로 공업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아짐
- 『아산만-대전-청주』 신산업지대의 경우 아산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의 기초소재 산업의 대전, 청주의 기술집약적 내륙공업을 연계개발하며 수도권 이전공장을 우선적 수용
- 『군산-이리-전주』 신산업지대의 경우 군산신항을 중심으로 임해공업의 거점을 구축하고 전주, 이리의 조립가공형 내륙공업과의 연계발전 도모
- 『광주-목포-광양만』 신산업지대의 경우 광주에 첨단기술산업, 광양만과 목포 대불에 임해기간산업의 거점기지를 구축하여 동남해안공업벨트의 개발효과를 국토의 서남부 지역으로 확산유도

□ 첨단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

- 지방대도시 주변지역에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 광주, 대전에는 기초과학과 첨단생산기능을 골고루 갖춘 종합적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부산, 대구, 전주, 청주등에는 연구개발기능과 첨단생산기능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현장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기술혁신센터로 개발

□ 『생산－기술－인력』의 지역내 공급체계 구축

- 지난 1, 2차 국토계획에서는 지방공업발전을 위하여 물리적인 공단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나, 3차계획에서는 지방대학의 적극육성, 산학협동체제의 구축등을 통하여 『생산－기술－인력』의 지역내 자급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제고

□ 지방공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 지방공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부담금』, 대도시지역 공단개발 이익 등을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 공업낙후지역에 대한 조세, 금융지원을 농공단지 수준까지 확대 적용하며,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훈련비 지원
- 민간기업의 참여에 의한 지방공업 발전을 위하여 공업단지 개발권, 근로자택지 개발권, 대학 우선입지권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전국을 「개발억제지역」, 「개발정비지역」, 「개발유도지역」, 「개발촉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차동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활용

나. 공장용지 공급계획

- 1992~2001년간 신규 공장용지 소요면적(기업소유 공장가동면적 기준)은 약 90.1㎢로 예상되며, 공장요지의 공급원활을 위하여 계획기간 동안 약 114㎢ 공급
- 이는 1991년의 공장용지 선공급물량이 약 2년치인 22㎢인데 비하여 2001년에는 4년치인 40㎢의 선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임

〈전국 공장용지 공급계획〉

(단위 : km²)

구 분	1989	1991	1996	2001	1992-2001
가동면적(A)	317.4	336.4	385.7	434.5	98.1
공급면적(B)	339.6	360.1	421.0	474.5	114.4
계획입지	178.6	194.0	241.3	279.2	85.2
자유입지	161.0	166.1	179.7	195.3	29.2
선공급면적*	22.2	23.7	35.3	40.0	—
(B-A)	(2.2년분)	(2.4년분)	(3.6년분)	(4.1년분)	

* 공장건설중인 면적과 공급여유 면적 포함

-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계획입지의 공급은 억제하되 기존에 계획중인 발안, 안중, 아산공단등을 개발하여 이전공장 수용등 입지수요에 대처
- 계획기간 전체 공급물량중 50% 이상을 중서부, 서남부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신산업지대의 형성을 정책적으로 유도
- 동남부지역의 경우 기존공단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고, 경북북부 및 경남서부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소규모 공단 개발

다. 공장용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 90년대 공장용지 공급은 공공부문에 의한 계획입지 뿐 아니라 자유입지허용, 공공과 민간과의 합동개발, 민간공단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입지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 기업의 자유입지, 또는 민간공단 개발시 개발이익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도로등 관련기반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토록 유도
- 공장입지에 따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환경관리적립금』을 설치운용하여 시장, 군수가 능동적으로 기업과 주민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토록 유도
- 피혁, 도금, 염색 등 지역주민 기피업종과 발전소, 폐기물매립장 등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첨단업종, 고부가가치 업종등 지역간 유치경쟁산업 입지시 이들 기피시설용 부지도 함께 제공토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

IV.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1. 교통망의 확충

가. 계획수립의 배경

- '80년대의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에 대한 교통부문투자비 비중은 2.2%로 '70년대의 1.6%보다는 더욱 높아졌으나, 미국, 일본 등 외국의 3~4%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국민경제의 고도화에 기인한 승용차증가, 화물수요증대 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80년대 후반기('87~'89)의 투자비중은 2.1%로 전반기('82~'86)의 2.5%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즉, 교통부문의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비해 교통투자가 저조하여 도로의 경우 애로 구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철도의 경우 간선도로와 수송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었으며, 항만도 하역능력 부족 및 연계수송체계 미흡으로 체선 및 체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90년말 현재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애로구간은 고속도로 530km 등 국도, 지방도를 포함하여 모두 3,092km에 이르며, 이 애로구간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1991년 1년 동안에만 고속도로는 3,800억 원, 국도는 1조 7,000억 원 등 모두 2조 2,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1990년의 인천항과 부산항의 입출항 선박의 평균 체선시간은 60~90시간에 달하여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가 지체되어 외항선박의 내항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항만적 체에 따른 부산항의 경제적 손실은 '90년의 경우, 7,000억 원에 달하였음
- 이와 같은 교통부문의 애로현상을 타개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방분산형 국토이용구조의 실현, 산업의 첨단·고도화에 따른 입지변화, 승용차시대의 도래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대의 정보화사회, 고소득사회의 기반이 되는 「전국의 반나절 교통권화」를 촉진 할 「고속교류망」 형성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나. 계획의 기본방향

- 2000년대의 고도로 생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국의 반나절 교통권화」를 이를 수 있는 고속간선망을 형성하되 남북한간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간선교통체계를 형성함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주요산업인 새로운 산업지대, 국민여가지대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인 신공항, 항만 등과 배후지역도 원활히 연결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함

다. 추진계획

간선도로망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선도로망체계를 구상하되 「9개 남북추의 전국격자형 + 대도시 중심 방사순환형 + 전국환상형」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고속 간선도로망체계를 형성함
- 2001년까지 고속도로신설 1,400km, 확장 700km 및 국도확장 5,500km등 간선망의 확충을 추진하되 구간별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추별 노선대, 도로시설등 급 및 구간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함. 2001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간선망의 규모가 고속도로 5,000km를 포함하여 모두 7,000km에 달할 수 있도록 간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90년말 현재 전국도로망의 포장을 71.5%를 2001년에는 100%로 제고시키며, 특히 국도, 지방도 등은 90년대 초반에 포장을 100%를 달성토록 함
- 지역간 통행의 원활화 및 도시내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내구간 통과도로의 우회도로 및 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농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을 선도 지원하기 위한 법정도로망을 확대하며, 확·포장 및 간선도로 연계 등 질적 개선을 도모함

2001년 까지의 도로개발

- 고속도로 신설 1,400km, 확장 700km
- 국도확장 5,500km
- 전국도로의 포장을 100% 달성

□ 간선철도망

- 기존 간선철도망은 계속적인 선형개량, 전철화, 복선화 및 신호체계개선 등으로 수송능력을 향상시켜 중단거리 여객수송 및 중장거리 화물수송을 담당토록 함
- 고속전철망은 대량교통수요증가인 경부추, 호남추, 영동추을 기본으로 형성하되, 교통수요, 지역개발에 대한 영향,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연결 철도인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의 개선을 검토함

□ 항만

- 대 북방 교역 및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인천항, 동해항 등 기존항만을 확충하고, 아산항, 군산신항, 대불항 등 새로운 국제교역 항만을 건설함. 광양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여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처리의 중심항으로 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을 집중개발하여 지역개발을 선도하도록 함
- 지역별 거점항만의 개발
 - 수도권 : 인천항, 아산항
 - 서남부지역 : 광양항, 목포항
 - 강원지역 : 동해항
 - 제주지역 : 제주항
 - 중부지역 : 군 · 장신항
 - 동남부지역 :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 공항

- 신국제공항
 - 신공항은 구라파, 미주 등 장거리 국제노선을 위주로 취항케하고 세계항공사의 중간기착지로서 기능을 갖도록 하여 국제화시대의 중추 기능을 담당토록 함
 - 신공항의 중추 기능을 총족시킬 수 있도록 신국제공항지역에 공항 및 항공관련 사업을 유치한 신도시를 건설하되, 24시간 개방형의 무역, 금융, 관광등 복합기

능을 가진 다목적 배후국제도시로 개발함

- 서울과 1시간 이내의 연결이 가능토록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되, 서울유입 교통량을 가능한 한 분산하여 수도권 교통체계에의 영향을 극소화함
- 지역의 거점도시 인근에 지역특성에 따라 국제적관광지,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국제공항을 개발하며, 앞으로의 여객수요에 따라 제주신공항, 청주신공항 및 동·서해안 신공항건설을 추진함

□ 유통체계

- 화물유통과 관련한 수송, 보관, 하역의 일관화, 수송 및 유통관련 장비의 표준화 및 정보화를 위해 화물유통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함
- 수출입 및 국내유통체계를 합리화하여 수송수단을 연계하고, 유통기능에 관한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화물터미널을 대도시에 건설하며, 전국의 주요도시에 지역거점 화물단지를 조성함

□ 도시교통

- 도로교통혼잡 가중 및 에너지 수급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 전철 등 대량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
- 도시내 및 지역간 교통처리의 원활화를 위해 도로교통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함
- 도시내부 및 외곽에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간선도로의 고속화를 추진하며 도로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2. 고속정보·통신망의 확충

가. 계획수립의 배경

- '80년대에 들어서 매년 100만회선 이상의 통신시설 공급으로 1987년 전국 전화의 자동화 및 전화적체를 완전 해소하고, 1가구 1전화 보급으로 통신선진국에 진입(세계 10위) 하였으나, 지역간 전화가입자수 및 이용도수에 지역격차가 심함

- 그동안 기본통신수요 층족에 급급하여 부가가치 통신 등 고도 통신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됨

나. 계획의 기본방향

- 정보화와 지역발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균형적 확산, 원활한 지역간 정보교류 등을 도모하여 전국토에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고도정보·통신체계를 조성함

다. 추진계획

- 전국적인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조속한 구축
 - '9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전개, '90년대 중반이후 전국적으로 서비스 확대
 - 정보통신의 고도화로 증가할 국제적 정보유통을 전국에서 원활히 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위성통신의 발사, 운영·해저광케이블의 구축 확장 등 국제적인 정보통신체의 정비와 국제협력증진 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
 - 지역별 중심도시에 지역정보센타를 설립하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텔리포트)를 건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V. 환경보전 및 국토자원관리

1. 계획수립의 배경

- 경제성장과 개발위주의 국토개발 및 자원이용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투자액은 매우 저조

(GNP 대 환경부문 투자액(1990))

한국 : 0.13%, 일본 : 0.34%, 미국 : 0.57%, 스웨덴 : 1.69%

-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용수수요의 집중화 및 대량화가 요구되나 수자원의 계절별 편중 및 지역별 부존량의 불균형으로 개발추진에 많은 애로
- 자원개발시설이나 환경정화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실천에 어려움
- 국제 환경문제의 정치·쟁점화로 신에너지의 개발, 산업구조혁신, 국민의식전환 등의 행동전략 필요
- 장기적, 종합적 안목에서 환경보전과 한정된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가 기본전제로 되어야함

2. 환경보전

□ 동향 및 문제점

-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종합적 접근과 근본적 대응책은 미흡
 - 주요도시 및 공단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심화 및 기준치 초과(SO₂, TSP)
 - 상수취수원인 호조와 하천은 대부분 2내지 3급수
 - 폐기물 매립지 부족 및 민원야기에 따른 부지확보 곤란
- 지구온실화, 산성비 등 국제환경문제의 협약규제 점차 강화

□ 기본방향

- 각종 개발정책을 환경보전 대책과 연계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 환경기준의 강화와 환경오염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
- 오존층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등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환경규제에 능동적 대처

□ 추진계획

- 종합적 녹색계획(Green Plan)의 수립 및 추진
 - 국토개발사업시 환경오염방지대책 의무화
 - 환경시범도시 건설 추진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

-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개선
 - 대상사업을 현재 15개 분야에서 산지개발 및 폐기물 처리시설사업등의 분야까지로 확대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참여제도 도입
 - 평가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기능의 강화
-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연차별 강화
- 오염원인자에 대한 「오염유발부담금제」도입
- 환경 정화시설의 확충
 - 단계별로 157개 시·읍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하수처리이율을 28%에서 70%로 제고
 - 광역 위생매립지, 소각처리시설,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역별로 확보
- 기술혁신, 국민생활 양식의 전환등을 통하여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처

3. 수자원 개발

동향 및 문제점

- 강수량의 지역별, 계절별 편차로 수자원 이용 및 관리상 어려움 상존
- 수자원 이용총량은 약 250억톤/년으로 강수량의 20%에 해당하며 2001년 까지 약 81억톤의 신규수요발생 전망
- 상수취수원 중 15%만 1등급으로 양질의 상수 공급 곤란

기본방향

- 유역간 지역간 용수의 균형개발로 지역별 안정적 용수 공급
- 종합적 수자원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화 재해방지 기능 강화
-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및 급수혜택의 평준화

추진계획

- 수계별 댐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확대
 - 총 12개 댐(공사중 포함) 39억톤 공급량 추가 확보
- 기간 중 8,500km의 하천개수로 개수율을 53.2%에서 77%로 제고

- 14개소의 지역별 광역상수도, 4개소의 공업용수도 건설(군장, 충남해안등)
- 상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약 24,000km의 노후관 대체
- 다원화된 하천관리를 유역별로 종합체계화 유도

4. 에너지 개발 관리

동향 및 문제점

- 총 에너지 수요는 1988년의 75.4백만 TOE에서 약 2배로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외의존도 심화
- 수송부문의 소비 증가가 현저하며 석유의존도는 50%를 유지하며 계속 주종 에너지로 역할 담당

추진계획

- 에너지 비축시설 및 원전시설을 업격한 입지 심사를 거쳐 증설
 - 기간 중 19개소 약 28,000MW 용량의 신규 전원 설치
 - 석유비축설비를 현재의 3배 규모로 확장
 - 천연가스의 수입터미널을 1~2개소 확충하고 시베리아산 천연가스의 동해안통과 배관망 설치 검토
-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및 토지이용구조 모색
 - 대도시 및 신도시 지역에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제 도입

5. 여가공간 조성

동향 및 문제점

- 소득수준 향상, 자동차 보급증대, 여가시간의 증대,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활동은 생활의 필수요소로 등장
- 참여율은 90%이상으로 활동량은 88년 대비 약 2배 증가 전망
- 자연속에서의 휴식활동외에 문화, 건강증진, 자기개발, 사회참가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이고 창조적 활동으로 변화

- 스포츠 및 휴식형 여가활동 증대 (도시공원이용, 수변활동, 야영, 골프, 스키등)
- 여가공간과 시설은 공급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으며 다양성 구비 미흡
 - 도시공간 조성을 36.4%, 자연공원 투자조성실적 : 34.9%

〈공원율(1990)〉

서울 : 1.1% (자연공원제외), 동경 : 4.0%, 파리 : 26.9%, 뉴욕 : 13.1%

□ 기본방향

- 여가수요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 전국적으로 다양한 휴식·위락공간 개발
-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국민여가지대 조성

□ 추진계획

- 여가수요, 이용권 및 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가 권역 개발
 - 대도시 이용권 : 대도시 주변 1~2시간 거리내 휴식·위락공간 개발
 - 전국적 관광권 : 지역별 자연특성을 활용 권역별로 중심지역에 종합여가 단지 개발(설악권등 19개 권역)
 - 관광권 개발과 역사문화권 연계개발(백제문화권등 5개)
-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지대 조성
 - 동남부지역
 - 체류형, 휴양형, 교육형 여가공간으로 개발
 - 지역과 자원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발
 - 권역별 관광·휴양 거점도시 육성(속초, 강릉, 춘천등)
 - 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개발과 연계
 - 제주도지역
 - 섬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간주하여 체계적 개발
 - 독특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
 - 성산포 관광단지 및 지정 관광지구의 적극 개발 추진
- 공원관리 체계의 개선

- 도시공원 기능의 확대 및 자연공원의 보전적, 교육적 기능확대
- 위락공간 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의 연계화 방안 강구

6. 해안역 이용과 관리

□ 동향 및 문제점

- 국토의 3.5배에 달하는 대륙붕과 개발이 용이한 수심 20m이내의 수역만도 21천㎢로 추정되어 많은 개발잠재력 보유
- 산업입지의 임해지 향적 배치, 항만, 도시개발등 간척매립을 통한 개발수요증대 : 해안토지개발 년 4.6% 증가

□ 기본방향

- 해안역 이용 수요증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파괴등에 대처하여 해안이용과 보전 질서 확립
-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조직 정비

□ 추진계획

- 이용가능 수역의 이용율은 28%에서 37%수준으로 제고하고 이를 위한 해안매립 계획의 수립 및 집행(대상면적 : 1,179㎢)
- 해안용도지구제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해안관리법」 제정
- 해안역 이용·개발의 통제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7. 산림자원

□ 동향 및 문제점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증가로 매년 1만ha 내외의 산림이 감소하여 2001년에는 6,365천ha로 전망
- 용지생산이 가능한 산림면적은 전체산림 면적의 10%에 불과하여 국토녹화는 성공하였으나 임업생산수준 및 산림환경 기능은 기초단계

□ 기본방향

- 녹화위주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전환하여 임업의 진흥과 산촌소득개발 추진
- 산림자원의 공익적 기능 및 다목적 이용의 확대

□ 추진계획

- 경제수 위주의 질적조림으로 인공림율을 38%로 확대
- 산림부산물 생산단지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다목적 이용개발
- 산림경영제도의 개선 및 임업진흥촉진지역 지정
- 임도를 증설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지역산업도로 역할 도모

VI. 국민주거수준의 향상

1. 계획수립의 배경

□ 현황과 문제점

- 주택재고는 년평균 2.6%씩 증가하여 왔으나 가구수는 3.2%씩 증가하므로써 주택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자가세대가 점차 감소하고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임해 과밀가구의 분포가 점증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악화(하향이동) 되는 결과를 초래

□ 주택정책의 평가

- 주택금융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신축을 위한 주택투자 재원을 중산층, 특히 고소득층에게 과다 의존하다 보니 주택건설은 경기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량의 확대는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하여 왔으며, 따라서 수형주택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산업의 부진을 초래하였음. 특히 주택을 자산가치 보전 수단으로 인식하므로 주택의 과다점유 또는 과소비를 유발하여 왔고,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한 가격통제 및 투기억제 대책은 주택생산과 공급을 위축시켜 왔음

□ 주택수요의 전망

-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의 심화 현상, 1인/독신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은 주택의 양적수요를 급신장 시킬 것으로 전망됨
 - 가구수(일반가구 기준) : '90년 1136만→2001년 약 1492만으로 전망
 - 독신/단독가구 : '90년 10%→2001년 12.7%
- 교육기회의 확대, 소득의 증가 등으로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므로 주거환경 및 주거의 질 등에 매우 민감한 수요구조로 변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인당 국민소득이 8,000~13,000불 수준에 이를 때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승용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 도심의 지가상승 등은 주거지의 외연적 확장 촉진

2. 계획의 기본방향

□ 주택가격의 안정

- 근본적으로 물량 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 주택거래/유통 질서 확립
-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택의 수급을 간접적으로 조절

□ 공급확대

- 신축주택 공급 확대
- 기존주택의 보전 및 주거수준 향상

□ 소득계층간, 지역간, 점유형태간 주택수준의 격차 완화

- 최저(적정)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 최저이하 계층을 최저수준으로 유도
 - 최저수준 계층은 적정수준으로 유도
- “호화”, 또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소비는 억제

3. 추진계획

계획의 목표

- 신축 : 1992-2001 기간중 총 538만호를 건설, 보급율(보통가구 기준)을 72.1%에서 92.8%로 제고
 - 신축주택의 규모는 평균 23평(전용면적기준)으로 하고

〈참고 : 일본과 한국의 주택규모 비교〉

(단위 : 평)

구 분	한 국 ('85)			일 본 ('83)		
	전 국	시 부	서 울	전 국	동경도	동경23구
주택호당	22.3	25.6	28.5	26.0 ¹⁾	22.0 ³⁾	16.9
평균면적				27.2 ²⁾		
1인당	3.4	3.3	3.6	4.3	3.6	—
주택면적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1985

일본총무성 통계국, 「주택통계조사」 소화 58년(1983)

주 : 1) 1983

2) 1988

3) 3대 도시권(동경,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고베 등)의 평균

- 총 물량 중 40.7%를 수도권에 건설하여 보급율을 '90년 현재의 63.4% 수준에서 83.6%로 제고
- 이를 위한 최소 전국적으로 1억 1900만평의 택지 소요

〈지역별 주택 보급율 전망〉

(단위 : %)

년 도	전 국	수 도 권	부 산	대 전	대 구	광 주
1992	77.8	75.8	63.8	76.0	67.6	73.4
1996	84.7	79.4	74.0	83.0	76.2	82.1
2001	92.8	83.6	89.2	92.7	88.6	91.8

○ 기존주택의 보전

- 개·보수, 중·개축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존주택 재고의 효율적, 경제적 이용 촉진 ; 특히 10~25년된 주택인 경우 구조적인 개·보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현행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확대 적용)
- 주택의 경제 수명을 늘리고 기존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기적인 주택점검제도를 실시토록하고 주택조례를 입법화하여 주택관리를 강화토록 촉진

□ 정책방안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는 각종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주택행정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주택의 계획, 집행, 행정업무를 수행, 단, 업무수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체계를 크게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으로 이원화하고 공공주택은 전액정부가 지원/투자하는 영구임대주택만으로 국한하고 민영주택은 다시 정부지원 민영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나누어 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위임. 중산화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택지 및 기타 간접적인 지원체계를 강화(소득계층별 주택공급 체계 강화)
- 주택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택지의 확대 공급을 기하는 동시에 주택생산능력을 제고함. 도심토지의 효율적, 입체적, 복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지구제, 도시계획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택지문제는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 광역적으로 해결하되 신도시 개념을 이용할 경우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하도록 함
- 주택생산능력을 육성하기 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술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제산업을 육성하고 공법개발을 적극 유도

- 민간주택금융은 상업「베이스」로 전환하여 업무영역을 확대, 자본자율화에 대비토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은 조성원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정책수단으로 이용. 한편 취득과 세(취·등록세)는 주택거래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유과세(재산세)는 주택의 과소비, 과다점유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양도과세(양도소득세)는 동결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선하여야 함
- 기존 주택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보완.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확대 적용
- 주택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거래정보를 “대중화”할 수 있도록 중개제도를 정비하고 담당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정

VII. 국토이용 · 관리

1. 계획수립의 배경

□ 국토이용 · 관리의 문제점

- 사회 ·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용지(택지, 공업용지, 공공용지등)의 공급 부진

'80 대비 '88 도시적용지증가 : 15.9%	'80-'88기간중 공업용지증가 : 31.5%
동기간중 도시인구증가 : 30.5%	동기간중 공공용지 : 20.3%
동기간중 GNP 증가 : 102.0%	동기간중 택지증가 : 8.0%

- 수요발생지역과 공급가능지역 간의 불일치로 지역적 수급격차 심화(수도권등)
- 투기적 동기에 의한 불건전한 거래 만연으로 물가상승 및 시장의 불안정
 - '80-'88 기간중 매년 전국토의 6%이상이 거래되어 이웃 일본의 약 10배에 달하는 높은 거래율
 - 1인당 GNP 대비 도시지역 주거지 평균가격은 지가고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3배이상(1976년 기준)
- 국토자원관리의 비효율성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및 정책실효성 제고에 장애

- 국토이용계획의 선도적 기능미흡 및 계획행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마찰유발
- 국토관련 정보의 부실 및 정책수단간의 연계성 부족

향후 여건변화 전망

- 공개념 관련입법의 본격 시행으로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의식과 갈등중대 예상
- 토지이용형태의 변화예상
 - 소득증대 및 차량보급확대에 따른 위락적 용지수요와 공공용지 수요증대
 - 농산물시장 개방관련 농지이용구조의 변화 : 담의 감소 가속화 전망
- 지자체 실시와 관련한 주민의식 및 행정형태의 변화전망
 - 개발수단의 지방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이해상충 가능성
 - 지역환경보전 및 지역이해에 대한 주민의 권리주장 비등예상

2. 계획의 기본방향

-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경제활동을 선행적으로 수용하는 용지공급확대
- 국토계획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
- 국토자원의 공공성 인식확대와 부동산투기 근절로 토지시장의 안정
-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절약적 토지이용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

3. 국토이용수급계획

주요용도별 용지소요 전망

- 540만호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 397㎢
 - 산업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공업용지 : 114㎢
 - 공공시설확충 및 국민편의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 838㎢
-] 1,350㎢

□ 개발가능토지자원 추정

- 도시계획구역내 미활용지 : 약 325km²
 - 도시계획구역내 농경지전용가능면적 : 약 431km²
 - 도시근교 구릉지 : 약 642km²
 - 시공중인 간척·매립면적중 공업 및 도시용지 : 약 104km²
- 약 1,500km²

□ 국토이용 수급 전략

- 농지와 산지의 선별적인 전용활용 : 무리한 농지전용의 제정책의 완화
 - 기간중 도시 및 공업용지 등으로 농지 약 600km², 산지 약 440km²전용
- 수도권등 대도시권내의 용지부족을 체계적으로 해소키 위한 위성도시 건설 검토
- 장래수요에 대비한 적극적 국토확장 추진 : 도시 및 공업용지로의 활용도모
 - 261개지구, 1,179km² : 2001년의 국토면적 100,442km²
- 지역균형개발목적에 부합도록 지역간 공급물량 조정
- 기존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수급격차 완화

4. 제도개선 및 정비

□ 토지공개념의 정착과 발전으로 투기풍조의 근절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철저한 집행과 세부사항의 지속적 보완
- 토지관련 기존세제(종합토지세제등)의 보완·강화
 - 비업무용·업무용 구분의 합리적 조정으로 합산과세 확대
 - 과표의 조기 현실화로 조세의 정책기능 제고
-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부동산문제 접근으로 투기대책의 종합화
 - 일반 조세·금융수단에 토지정책적 기능 부여
- 공공토지선매의 활성화 및 국공유지 비축 확대 : 장기임대제도 도입

□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정립과 정책수단의 다양화

- 현행 국토이용계획의 2단계화
 - 국토이용기본계획(중앙) : 전체적 차원에서 장기적 방향제시 및 개략적 용도구분
 - 국토이용시행계획(지자체) : 구체적 행위규제
- 해안역에 대한 이용 및 관리계획의 수립 : 해안역 이용 수요의 조정 및 사후관리
- 지자체 실시에 대응한 행위규제방식의 다양화
 - 수단의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위양 :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융통성 부여
- 계획내용의 정밀화 : 재개발, 신시가지 개발지역에 지구상세계획제도 도입

□ 정책운용기반의 정비

- 공시지가체계의 정착과 관련제도에의 적용확대
- 토지거래신고대상구역의 전국확대 : 신고자료를 관련행정근거로 활용
- 장기행위제한토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 강구
 - 현행 G/B내 토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용지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검토
(매수청구권 부여 및 국공유화 신중검토)
- 토지관리 및 행정의 선진·전문화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토지보상관련제도의 개선
- 전국토지의 거래·소유·이용·가격등 제반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합리적 정책집행 기반확보

VII. 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

- 지금까지의 국토계획들은 계획체계의 혼란, 집행체계의 미비,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 한편 지방자치체의 실시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토개발투자의 비용상승압력은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의 정비와 투자재원조달방안의 확충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음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조달 및 배분

계획수립의 배경

- 국토개발투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 GNP 투자율이 최근 하락하고 있음. 또한 개발부문에 따라 증가율의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음

〈경제성장과 국토개발투자〉

(단위 : 10억 원, '85년 가격)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평균 ('82-'88)
국민총생산(A) (경제성장율)	59,332 (7.2)	66,803 (12.6)	73,004 (9.3)	78,088 (7.0)	88,196 (12.9)	99,447 (12.8)	111,575 (12.2)	82,347 (10.6)
국토개발투자(B) (증가율)	9,614 -	11,299 (17.5)	11,999 (-6.2)	12,097 (0.8)	14,097 (16.5)	13,549 (-3.9)	14,290 (5.5)	12,486 (5.0)
B/A(%)	16.2	16.9	16.4	15.4	15.9	13.6	12.8	15.2

- 국토개발투자중 지방정부의 투자비중이 낮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투자비중〉

(단위 : %)

구 분	한국('82-'88)	일본('87)
중 앙 정 부	69.8	37.1
지 방 정 부	30.2	62.9

- 제2차 국토계획기간중 도로, 항만, 택지, 환경부문의 투자가 부진하여 경제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계획의 기본방향

- 택지, 상하수도, 교통 등 개발수요 증가에 대처한 국토개발투자

- 국토개발투자재원의 확충과 다양화
- 상대적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증대
- 국토개발투자사업추진의 합리화

추진계획

- 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수요의 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보다 높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증대 요구는 국토개발투자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제3차 계획기간중의 7% 경제성장을 달성을 위한 30-35%의 투자율과 82-88기간 중의 국토개발투자의 GNP에 대한 15.3%를 감안하면 계획기간중의 국토개발투자의 가용금액은 GNP의 17-18%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토개발투자의 주요부문에 대한 투자수요는 1985년 불변가격으로 약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국토개발 주요부문의 주체별 투자소요('92-2001)>

(단위 : 10억 원, 85년불변가격)

구분/재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민간	계
주 택	22,967.3 (15.0)	15,311.5 (10.0)	114,835.2 (75.0)	153,114.0 (59.7)
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	14,326.8 (40.0)	17,908.5 (50.0)	3,581.7 (10.0)	35,817.0 (13.9)
교 통	30,420.0 (60.0)	10,140.0 (20.0)	10,140.0 (20.0)	50,700.0 (19.8)
공 업 입 지	1,700.0 (10.0)	3,400.0 (20.0)	11,900.0 (70.0)	17,000.0 (6.6)
계	69,414.1 (27.1)	46,760.0 (18.2)	140,456.9 (54.7)	256,631.0 (100.0)

주 : 괄호내의 숫자는 구성비를 나타냄

- 주요부문 투자의 분담
 - 중앙정부 : 69조원(27.1%)

- 지방정부 : 47조원(18.25)

- 민간부문 : 140조원(54.7%)

- 투자재원의 확충방안

- 지방채의 대폭적인 활성화

- 통신, 항만, 공업입지개발, 터미널과 같은 민관협력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방채에 대한 일반공모제도 도입

- 기채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

- 수의채나 기업체에 대한 법적체계의 마련

- 민관협력을 통한 민자도입의 적극적 추진

- 지자체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출자 형태인 제3섹터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나 토지소유자의 지분참여를 적극 유도

-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의 강화

- 지방정부에 의한 수자원, 원자력 발전, 대형공단, 컨테이너 등에 대한 법정신세 목의 신설 검토

- 주민세의 소득할을 개편강화한 지방소득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검토

- 효율적인 정부간 재정관계의 형성

- 국민적 기본수요의 지방정부의 자주 노력에 기반을 두고 지역개발사업비 및 보조금지급의 합리화 도모

-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개발융자를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강화

2.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의 정비

□ 계획수립의 배경

- 지방추세에 비추어 계획권한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실정의 반영 및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국토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타계획과의 연계체계 미비로 계획의

실천성이 저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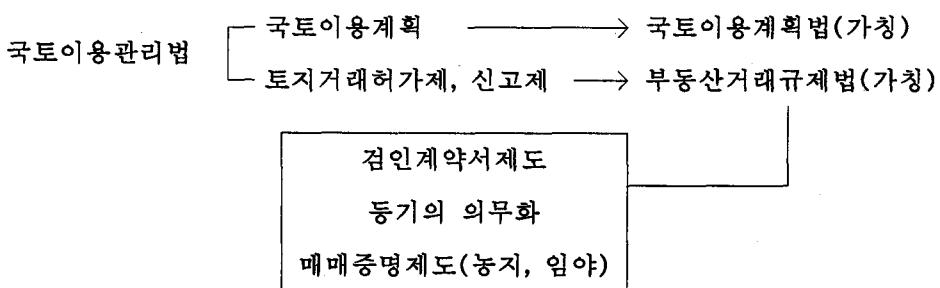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각 지역은 해당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 개발에서의 국가적 통합적 저하 우려

□ 계획의 기본방향

- 자율적 지역개발체제의 정립
- 국토계획의 집행과 관련 타부문계획 및 지역계획간의 연계체계 확립

□ 추진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개정
 - 국토계획은 전국계획과 지역계획으로 분류함
 - 전국계획은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으로 함
 - 지역계획은 광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으로 분류함
- 국토이용계획체계를 개정함



- 국토계획의 집행성 제고를 위해 경제계획과 국토계획의 연동화 추진
- 국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지역균형개발법
 - 신도시개발법
 - 해안관리법
- 광역행정체계의 구축
 - 도시기반공급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역범위가 다양한 광역행정체계의 우선적 도입
(예: 교통부문, 상하수도부문)
 - 광역행정기구로는 기존의 행정협의회보다는 집행능력이 가미된 보다 강력한 기구

설치 검토

- 특별시와 직할시에 대해서 인접 도와의 광역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
-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 일본 : 광역행정기구가 발행하는 지역종합정비 사업체의 특별채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의 30~35%를 지방교부세로 교부
- 국토계획집행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 계획협약제도의 도입 검토
 -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재정투자의 분담과 의무를 규정하는 협약의 체결
 - 계획협약은 지역개발계획의 중점과제에 한정됨
 - 국토계획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정부간의 계획조정을 담당하며 집행의 원활을 위해 국토계획집행단(가칭)의 설치 검토

IX. 통일을 향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1. 계획수립의 배경

- 탈 이데올로기 추세 진전 및 남북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국토개발차원에서 통일기반조성의 필요성 대두

〈접경지역 현황〉

- 위치 : 휴전선지역과 민통선지역의 10개군
- 면적 및 인구 : 7,368㎢, 69만명
- 생활환경 및 경제 : 주민생활환경과 경제수준 낙후
- 남북연결시설의 단절 : 철도 2개 노선, 철로 11개노선, 전기·통신 송로, 선로

4. 계획의 기본방향

- 남북교류공간의 조성 및 접경지역내 주민생활여건 개선

- 단절된 남북교류망을 복원·개발
- 국토자원을 남북간에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전개
- 남북한 관계개선 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남북한 관계개선과 단계별 국토계획방향〉

구 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남북관계진전 개발방향	제한적 교류 남북교류공간의 조성 접경지역 주민 생활 환경개선	전면적 교류 남북공동개발 사업추진	남북통일 남북균형개발을 위한 국토주형성
	남북연계교류망 복원·개발		

3. 계획 및 기본방향

-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의 장 조성과 주민생활환경 개선
 - 남북교류의 장 조성
 - 통일동산, 자유로등 부분적 상호왕래를 위한 교류시설의 건설
 - 평화시 개발구상의 구체적 추진
 - 무역, 교통, 상품전시, 공동생산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단지의 구상
 - 주민생활환경의 개선
 - 취업기회, 교육, 의료, 문화, 복지시설 및 접근교통망 확충
 - 접경지역을 특정지역등으로 지정·개발 관리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접경지역개발의 법적 기반 마련
-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로 개발
 - 한강등 남북연결 수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개발 검토
 - 비무장지대의 자원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와 보존지대의 설정
 - 광물자원의 개발 협력사업추진으로 상호간 경제적 이익 총족
- 남북교류망의 정비
 -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개발로 인적·물적 교류 촉진
 - 고속간선도로망 건설과 연계하여 남북연결간선망의 다양화 모색
 - 물량에 따라 남북교류를 위한 중점 항만의 확충

〈 2001년의 국토미래상(지표) 〉

구 분	지 표	단 위	1990	2001
총 량	인 구	천 인	42,869	47,150
	1 인 당 GNP	\$	5,569	17,760
인 구 배 치	수 도 권	추세연장	천인(%)	18,320(42.7)
		계 획	천인(%)	—
	지 방	추세연장	천인(%)	24,549(57.3)
		계 획	천인(%)	25,900(54.9)
도 시 화	도 시 화 율	%	77.8*	86.2
공 업	공 장 용 지	km ²	340**	475
주 택	주 택 보 급 율	%	72.1	92.8
	주 택 수	천호	7,374	12,088
교 통	고 속 도로	km	1,551	2,951
	도로 포장율	%	71.5	100.0
	철도 전철비율	%	16.7	50.0
	항만 하역 능력	백만톤	224	420
	자 동 차	만대	340	1,200
	가구당 자동차	대/가구	0.3	0.8
상 하 수 도	상수 보급율	%	79	90
	하수 처리장	%	31	70
수 자 원	총 용수이용량	억m ³	249*	330
여 가	여가활동참여비	백만인/년	279*	530

주) *는 '88년 기준

**는 '89년 기준

〈국토계획의 공표에 따른 투기행위의 방지대책〉

1. 단기대책

-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구역의 전국적 확대 지정
 - 현재 전국토의 83%에 신고구역 지정
 - 토지거래 규모, 목적, 가격의 저렴한 관리
- 주요 국토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의 확대 지정
 - 현재 전국토의 41.3%에 토지거래 규제구역 지정
 - 규제구역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통제강화
 - 토지거래 허가기준의 강화
 - 공공 선매권의 활동
 - 공공개발 공급토지에 대한 환매권 강화
- 공시지가제도에 의한 지가관리의 강화
- 주요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및 제3섹타에 의한 합동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2. 장기대책

- 토지공개념제도의 철저한 시행
 -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양도소득세제, 종합토지세제 등의 철저한 시행
 - 과표현실화의 조기 추진
 - 전국의 토지거래, 이용, 가격 등 제반 토지관련 정보체계의 신속한 구축
- 공공의 토지비축 확대